

뉴욕 주민 여러분,

급여 불평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동일한 일을 하고도 종종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직무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에게는 노동하는 내내 불공평하고 부족한 보수가 반복됩니다.

급여 불평등은 여성이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은퇴를 위해 저축하기 힘들게 합니다. 뉴욕에서는, 남성에게 지급되는 1달러당, 여성에게는 평균 88센트가 지급됩니다. 우리 주 내의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급여 격차가 더욱 심합니다. 백인 남성에게 지급되는 1달러당, 흑인 여성은 63센트, 라틴계 여성은 56센트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통계는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직장에서의 급여 평등을 위한 투쟁을 약속드립니다. 본 책자는 새로운 법과 기존 법률 아래 여러분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법은 급여 불평등에 일조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림

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 레
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지원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시민권리국 (**Civil Rights Bureau**)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노동자 평등 대책 위원회:
(212) 416-8700
TaskForceforWorkersEquality@ag.ny.gov
ag.ny.gov

뉴욕 주 노동부, 근로기준국 (**Division of Labor Standards**)

Bldg. 12, Rm. 266B,
State Office Campus
Albany, NY 12240

(888) 469-7365
labor.ny.gov/home

뉴욕 시 인권 위원회

40 Rector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06
(718) 722-3131

www1.nyc.gov/site/cchr/about/
contact-us.page

급여 평등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아십시오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
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아십시오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州) 법률에 따라,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 군복무, 또는 가정 폭력 피해와는 무관합니다. 업무에 들어가는 기술, 노력, 및 책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도 있고,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 연수, 생산의 우수성, 양 또는 질에 따라서, 혹은 교육, 훈련이나 경험과 같이 보호 범주 (예를 들면, 성별이나 인종) 이외의 요인에 따라서 급여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직장 동료와 급여에 대해 의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州)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다른 직원에게 급여에 관하여 묻는 것, 다른 직원과 급여에 대해 논의하는 것, 또는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급여가 얼마인지 밝히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한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책은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므로, 직장 내의 불법적 급여 불평등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州) 법률에 따라, 고용주 또는 예비 고용주는 면접이나 일자리 제공 또는 승진 조건으로, 귀하나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에게 급여 이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책은 이전에 공평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줍니다.

의도적인 급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은 또한 성별,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및 기타 보호 범주에 근거한 의도적 급여 차별을 금지합니다. 앞서 언급된 법에 따른 급여 평등 신고와 연방, 주, 및/또는 지방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신고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차별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기 원한다면, 변호사와 우리 사무소의 고용차별에 대한 책자에서 귀하의 선택지와 필수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g.ny.gov/employee-discrimination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귀하가 급여 불평등이나 차별을 신고했거나, 직장 동료와 급여에 대해 논의했거나, 급여 이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이 브로셔에 설명 된 법률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신고하기

급여 평등 위반을 경험한 경우, 고용주가 급여 이력을 묻거나 직장에서 급여에 대한 논의를 금지한 경우, 혹은 관련 보복을 당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고용주에게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에 더하여 여러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노동자 평등 대책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12) 416-8700 또는

TaskForceforWorkersEquality@ag.ny.gov, 또는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 신고양식을 작성합니다: ag.ny.gov/labor-complaint

주의사항: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기타 기관 또는 법원 기한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는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 양식 또는 정책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기소합니다. 본 사무소는 개인을 변호하지 않고, 뉴욕 주 기관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직자 또는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유사한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뉴욕 주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신고합니다:

(888)-4-NYSOL 또는 **(888) 469-7365**

-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합니다:

(718) 722-3131 또는 www1.nyc.gov/site/cchr/media/salary-history.page